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101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장동찬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783,437원 및 그 중 31,260,806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5.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2.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6. 15. 접수 제28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8. 3. 6. 보증금액을 3,400만 원, 손해금율을 연 10%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2) C은행은 2020. 8. 18. 원고에게 “2020. 7. 21.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11. 19. C은행에게 31,482,4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21. 1. 18. 기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잔액은 31,783,437원[= 대위변제금 원금잔액 31,260,806원(= 31,482,424원 - 미환급보증료 등 221,618원) + 손해금 522,631원]이다.

나. 한편,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2. 7.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6. 15. 접수 제2851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였던 1) D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7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1,783,43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잔액

31,260,806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5.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원인일로 기재된 2020. 2. 7.경2)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2018. 3. 6.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A이 2020. 7. 21. C은행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2020. 2. 7. 무렵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C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갑 제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은행, E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2. 7.경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52,540,2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3)), 경주시 F 답 79㎡(시가 1,911,800원4)), G 답 122㎡(시가 15,000,000원5)), H 답 360㎡(시가 5,000,000원6))로 총 합계 74,452,000원인 반면 피고 A은 원고(C은행)에 대한 채무 외에도 기업은행에 대하여 85,496,436원(2016. 5. 16.자 대출금 잔액), E은행에 대하여 38,050,097원(2019. 5. 31.자 대출금) 등 적어도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 내지 D에게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A이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A은 위와 같은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수익자인 피고 B 또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20. 2. 7. 2천만 원, 2020. 5. 15. 1천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 A이 2020. 6.경 직접 피고 B에게 대여를 요청하여 2020. 6. 15. 피고 A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은 선의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고 B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경주시

답 909㎡

- 이상 -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2) 아래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이 2020. 6. 15.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체결일을 피고 B이 D에게 처음 돈을 송금한 2020. 2. 7.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날짜는 2020. 6. 15.경으로 보인다.

3) 공시지가(㎡당 57,800원)를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4) 공시지가(㎡당 24,200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5) 2020. 6. 3. 소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등기원인 2020. 5. 5. 매매) 당시 신고된 거래가액이다.

6) 2020. 6. 19. 소외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등기원인 2020. 6. 19. 매매) 당시 신고된 거래가액이다.